

#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97
------------	-----

제출년월일 : 1998. 9.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변화하는 21세기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공공분야의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특히 IMF하에서 재정 건축, 대량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최악의 상황을 맞아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효율을 극대화 하 고자 유사증복기구인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을 통폐합하여 안 산시여성복지회관이 됨에 따라 각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임대아파트는 안산시여성복지회관장이 관리한다. (안 제3조)
- 위탁관리의 범위 (안 제9조제1항)
  -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관리)**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을 “안산시여성복지회관장”으로 한다.

**제9조(위탁관리)** 제1항 중 “시설의 일부 또는”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제9편 사업소 제4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 안산시조례 제124호 ]  
1986. 11. 25

개정 1990. 5. 1 조례 제321호  
개정 1990. 7.11 조례 제330호  
개정 1992. 5.13 조례 제448호  
개정 1993. 5.27 조례 제493호  
개정 1994. 5.14 조례 제544호  
개정 1994.10. 8 조례 제561호  
개정 1995. 4.26 조례 제627호  
개정 1996.11.14 조례 제7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청소년의 복지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임대 아파트는 안산시 선부동에 둔다.

제3조(관리) 임대 아파트는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위탁관리시에는 별도 수탁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이를 관리토록 한다.

제4조(입주대상자) ①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로 할 수 있다.

②임대아파트의 최대 입주민원은 500명으로 하고, 호당 입주민원은 5인이내로 한다.

제5조(입주허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대료등 납부 및 환불) ①임대아파트에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한 임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제7조(입주허가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주

## 제9편 사업소 제4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2. 전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제8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제8조 제5호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 중 다시 입주대상자가 된 자는 제외한다
5. 기타 입주허가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입주허가취소)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한 자  
(개정 '90. 7.11)
3. 시설내에서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4.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자
5. 타 사업장으로 전직한 자. 다만, 전직된 사업장에서 재 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 임대료등을 2월이상 체납한 자
7. 관장의 허가없이 타인을 동숙시킨 자
8. 입주자의 혼인
9. 기타 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제9조(위탁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임대아파트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를 위탁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편 사업소 제4장 근로 청소년 복지 회관 안산시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에 의한 임대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임대료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92. 5.13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93. 5.27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94. 5.14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94.10. 8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95. 4.26 조례 제6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만료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96.11.14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697
----------	-----

제출년월일 : '98. 9. 19.

제출자 : 보사·환경위원회

이하연위원장외6인

### 1. 수정이유

-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자가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에서 안산시 여성복지회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두 새로 입주 허가를 받아 계약은 체결해야 하는등 행정의 낭비 및 주민불편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소코자함.

### 2. 수정주요골자

- 부칙 사항중 “제2항(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받아 입주한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함.

##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규정) 이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받아 입  
주한자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신 설〉</p>	<p>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받아 입주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p>